

용인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

제정 1996. 3. 1 규칙 제 17호
개정 2005. 10. 5 규칙 제 418호
일부개정 2011. 2. 14 규칙 제 630호
일부개정 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(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
일괄개정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청원경찰법」 제5조의2 및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용인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1. 2. 14>

제2조(징계의 관할)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.

제3조(징계의 종류) 징계의 종류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, 징계의 효력은 「지방공무원법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1. 2. 14>

제4조(준용규정)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18호>

이 규칙은 일반규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2. 14 규칙 제63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,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